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219
----------	------

2022년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2. 5.25.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2. 5.27.

4. 상정일자 :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 17.)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 의안번호 제3219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용자금 조기상환 등으로 '예치금 회수'가 1,060억 5천 8백만 원에서 1,442억 3천 5백만 원으로 당초 대비 381억 7천 7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창업·재창업 기업 자금' 3,000억 원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 619억 7천 6백만 원에서
668억 7천 6백만 원으로 4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 '창업·재창업 기업 자금' 무이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금'을 종전 1,362억 7천 6백만 원에서 1,411억 7천 6백만 원으로 49억 원 증액하였고
- 이상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결과,
'예치금'을 종전 425억 8천 7백만 원에서
84.2% 수준인 381억 8천만 원이 증가한
807억 6천 7백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3219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1년도 결산결과 조정된 예치금과 2022년도말 지출 예정액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
- 나. 「4무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 자금」 3,000억원 공급에 따른 이차보전금 (49억원) 마련을 위해 기타회계 전입금 편성

○ 2022년 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세부사업	*당초(A)	변경(B)	증감(B-A) <증감률>
합 계	383,743	426,823	43,080
중소기업 금융지원	338,401	343,301	4,900 (1.4%)
중소기업직접용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136,276	141,176	4,900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216	216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지원	607	607	-
기금업무대행수수료	1,302	1,302	-
재무활동	45,337	83,517	38,180 (8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상환	2,750	2,750	-
예치금	42,587	80,767	38,180
행정운영경비	5	5	-
기금관리비	5	5	-

○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항 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합 계	383,743	426,823	43,080	합 계	383,743	426,823	43,080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212,709	212,709	-	사업비	기금 용자금	200,000	200,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	3,000	-		시중은행 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136,276	141,176	4,900
					시스템유지보수	216	216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607	607	-
예치금 회 수	106,058	144,235	38,177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1,302	1,302	-
					기타회계 전 입 금	61,976	66,876	4,900
그외수입	-	3	3	예치금	42,587	80,767	38,180	
				기금관리비	5	5	-	

*당초 수입·지출계획액은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받은 금액

3. 검토내용

- 관련 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고,
 - 관련 기준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수입계획)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지출계획)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21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수입계획중 ①**예치금 회수**에 당초 수입계획(1,060억 5,800만원)보다 381억 7,700만원 증액한 1,442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②**그외수입**에도 300만원을 순증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진출된 ③**기타회계 전입금**을 당초 수입계획(619억 7,600만원)보다 49억원 증액한 668억 7,6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 계정의 당초 수입계획(3,837억 4,300만원)보다 430억 8,000만원 증액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임
-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당초(3,837억 4,300만원)보다 430억 8,0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 ①**정책사업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당초 계획(3,384억 100만원)보다 49억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이나 증감률이 1.4%에 불과하여 의회의 의결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 ②**다른 정책사업인 재무활동(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의 경우, 당초 계획(453억 3,700만원)보다 84.2%, 381억 8,0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아울러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21회계연도 결산결과 등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 (재)창업자 등의 안정적인 금융지원(3,000억원 규모)을 위해 이차보전금 규모를 확대(49억원 증액)하고자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동 기금의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지출계획 변경현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당 초 (A)	기 금 운 용 계 획 변 경 안 (B)	증 감 (C = B - A)	증 감 륜 (D = C / A)
지출합계	383,743	426,823	43,080	11.2
중 소 기 업 금 용 지 원	338,401	343,301	4,900	1.4
중 소 기 업 금 용 지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338,401	343,301	4,900	1.4
중 소 기 업 직 접 용 자	200,000	200,000	-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 차 보 전 금	136,276	141,176	4,900	3.6
자금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216	216	-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지원	607	607	-	-
기금업무대행수수료	1,302	1,302	-	-
재 무 활 동	45,337	83,517	38,180	84.2
내 부 거 래 지 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2,750	2,750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원리금상환	2,750	2,750	-	-
보 전 지 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42,587	80,767	38,180	89.7
예 치 금	42,587	80,767	38,180	89.7
행 정 운 영 경 비	5	5	-	-
행 정 운 영 경 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5	5	-	-
기 금 관 리 비	5	5	-	-

※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

자료근거 : ①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용자계정) 지출계획, ②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22. 5.25) 재구성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부대의결 : 「생략」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2022. 6. 17.)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219
----------	------

제출년월일 : 2022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도 결산결과 조정된 예치금과 2022년도말 지출 예정액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

나. 「4무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 자금」 3,000억원 공급에 따른 이차보전금(49억원) 마련을 위해 기타회계 전입금 편성

○ 2022년 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세부사업	*당초(A)	변경(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383,743	426,823	43,080
중소기업 금융지원	338,401	343,301	4,900 (1.4%)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136,276	141,176	4,900
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216	216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지원	607	607	-
기금업무대행수수료	1,302	1,302	-
재무활동	45,337	83,517	38,180 (8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원리금 예수금 상환	2,750	2,750	-
예치금	42,587	80,767	38,180
행정운영경비	5	5	-
기금관리비	5	5	-

*당초 지출계획액은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받은 금액

○ 수입·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항목	*당초(A)	변경(B)	증감(B-A)	
합계	383,743	426,823	43,080	합계	383,743	426,823	43,080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212,709	212,709	-	사업비	기금용자금	200,000	200,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	3,000	-		시중은행 협력자금지원 이자보전금	136,276	141,176	4,900
					시스템유지보수	216	216	-
예치금 회수	106,058	144,235	38,177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607	607	-
					기금업무대행 수수료	1,302	1,302	-
기타회계 전입금	61,976	66,876	4,900		재무동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원금예금상환	2,750	2,750
그외수입	-	3	3	예치금		42,587	80,767	38,180
				기금관리비	5	5	-	

*당초 수입·지출계획액은 제306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받은 금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조치완료(제1차 추가경정예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김두만 (☎2133-5190)